

구간경계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견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권에 미치는 불편 사항을 일부 구간경계지역을 효율적으로 재조정하여 향후 주민 거주시 발생할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함.

2. 주요골자

- 산지등 능선을 이용 획정된 현재의 경계선을 도로여건등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 그 세부내역을 보면 동일아파트 신축부지를 포함한 사하구 감천1동 일부 12필지 12,817m²를 서구 암남동으로 편입조치 하는 사항임.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제2항

4. 검토의견

- 본 구간경계 조정에대한 의견청취건은 생활권과 행정권이 불일치하는 행정구역경계에대한 행정자치부의 일제정비계획에 의거 추진한 것으로 부산시에서는 동래구등 10개구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 본건은 2003. 9. 22 해당지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동일에서 부산광역시에 행정관할 구역 조정건의에 의거 서구 관계공무원들과 수차에 걸쳐 협의한 결과 합의된 것으로
- 행정구역의 경계는 일반적으로 주요도로, 하천, 주요지형지물등 지리적인 위치와 주민의 생활권, 행정권등을 일치시키는 것이 원칙인데 해당지역은 누가보더라도 생활권과 행정권, 지리적여건이 서구 쪽에 가깝다고 인정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 다만 2004. 7월 한달동안 주민의견 수렴 결과(감천1동 각종단체 토지 소유자등) 일부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대다수(69.6%)가 서구와 합의된 경계구역대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고 일부 반대자들은 서구로 소속될 토지에 대한 우리구의 세수 감소를 염려하여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구세수입에대한 확실한 보전보장을 받은후 조치해야 할것으로 사료됨.

2004. 9.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성